

「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」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17일

국토교통부장관

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소비자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와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대응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 시 전문분야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교육제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IT 활용 부동산서비스, 데이터분석 기법 등 프롭테크 교육 강화

(안 제4조제6의3)

나. 연수교육 시 중개대상물별 등 전문분야 교육을 30% 이상 실시토록 함

(안 제4조제2항)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

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7월 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부동산 산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yeoyeosisi@korea.kr

2)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

3) 전화/팩스 : (044)201-3412,3418/(044) 201 - 5538

4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<http://www.epople.go.kr>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(전화 : (044) 201 - 3412,3418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